

국회에서 의결된 **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**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9월 18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
법무부장관

박상기

● **법률 제15756호**

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

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미성년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미성년자등기부

제25조제3항제5호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미성년자”로 한다.

제4장제3절의 제목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미성년자”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중 “무능력자등기”를 “미성년자등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미성년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미성년자”로 한다.

1. 미성년자라는 사실

제47조의 제목 중 “무능력자등기”를 “미성년자등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무능력자”를 각각 “미성년자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제2호 중 “무능력자”를 “제한능력자”로 한다.

제49조제2항 본문 중 “무능력자”를 각각 “제한능력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법」 개정으로 금치산·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·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「민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,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미성년자등기부로 변경하고,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‘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’을 ‘미성년자라는 사실’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